

1. 住宅分讓價原價連動制施行指針中 改正指針

建設交通部 住政 58500-352 1997. 2. 25

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단위 : 천원/제곱미터

| 구 분 | 층별 | 건축비 상한가격 (분양면적에 적용)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 | 15층 이하 | 531 |
| | 16층 이상 | 590 |
|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초과 | 15층 이하 | 554 |
| | 16층 이상 | 618 |

1. 이 지침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.

〈해 설〉

□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아파트 분양가를 서울은 1.9%, 수도권은 2.7% 수준으로 인상키로 하고

—근거규정인 「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시행지침」을 개정, 표준건축비를 평균 4.3% 인상하여 1997. 3. 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음

〈건축비 상한가격 조정내역〉

| 평 형 | 층 별 | 현 행 | 조 정 | 상 승 폭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25.7평 이하 | 15층 이하 | 168만원 | 175.5만원 | 7.5만원 |
| | 16층 이상 | 187만원 | 195만원 | 8만원 |
| 25.7평 초과 | 15층 이하 | 175만원 | 183만원 | 8만원 |
| | 16층 이상 | 196만원 | 204만원 | 8만원 |

※ 현행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 : 원가연동제

○ 아파트분양가 = (택지비 + 건축비) 이내로 제한

- 택지비는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가격을 적용하고, 공공택지는 공급가격을 적용
- 건축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물가상승을 고려, 매년 조정

주택회보